#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693

발의연월일: 2021. 6. 8.

발 의 자:윤희숙·추경호·성일종

유경준 • 류성걸 • 윤창현

정경희 • 권영세 • 김 웅

박수영ㆍ최형두 의원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상이한 세율을 적용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고, 1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있음.

그런데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시켜 세율과 세액을 적용함으로써 높은 세부담으로 인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양도소득세 중과 시 농어촌지역 주택을 주택 수에서 불산입하는 것과 달리 현행법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을 적용할 때 농어촌지역 주택을 주택 수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농어촌지역에 한정하여 예외를 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1주택자가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인 1농어촌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하고,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소유한 다른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에 포함하지 않도 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1항 단서 신설).

#### 법률 제 호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1농어촌주택(농어 촌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하인 농어촌주택으로 한정하며, 이하 제9조제1항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상과 다른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농어촌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 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한 경우에는 다른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 및 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과세표준) ① ~ ③ (생	제8조(과세표준) ① ~ ③ (현행
략)	과 같음)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	4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u>다른 주택</u>	<u>다음 각 호의</u>
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u>
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u>&lt;신 설&gt;</u>	1.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
	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
	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
	를 말한다)
<u> &lt;신 설&gt;</u>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1농어촌주택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2
	억원 이하인 농어촌주택으로
	한정하며, 이하 제9조제1항에
	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단서 신설>

\_\_\_\_\_

\_\_\_\_\_

\_\_\_\_\_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② ~ ⑦ (생 략)